



의안번호	제101호
------	-------

<p>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--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10. 15.

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10. 15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」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현행 「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담원 위촉 시 자격기준을 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함.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청렴감사실)

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안 반영(사회복지과)

제2조(상담원의 위촉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민원서비스 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- 권고안 :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

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3) 규제심사 : 대상아님(참여예산실)

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) 예고기간 : 2018. 8. 20. ~ 2018. 9. 10.(20일이상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고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인재육성과(041-635-3685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상담원의 위촉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	명
입 안 자	민원토지과장	임	한 석
	민원행정팀장	이	재 성
	담 당 자	이	상 순 (746-5562)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담원의 위촉) <u>논산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20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</u></p> <p>2. <u>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</u></p>	<p>제2조(상담원의 위촉) ----- ----- <u>민원 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해당없음

나. 추계결과 : 해당없음

3. 작성자

민원토지과장 임한석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민원실)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.

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·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·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참고 2**공정위 용역 결과보고서 발췌 참고자료****개선대상 자치법규**

연번	개선대상 자치법규	조문(조항)	관련부서
1	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	6	도로교통과
2	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	17	안전총괄과
3	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6	평생교육과
4	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	4	평생교육과
5	논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	6	자치행정과
6	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	9	사회복지과
7	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	3	희망마을건설과
8	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	민원토지과
9	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	7	도시재생과